

# 03

## 미투 운동 이후의 언론계 성인지 감수성 고찰과 '피해자' 보호를 위한 성범죄 보도

장윤미 언론중재위원/변호사



## I. 들어가며

2018년 1월 29일 서지현 검사가 검찰내부 통신망에 자신의 성추행 피해사실을 공론화하면서 우리 사회 미투 운동이 촉발되었다. 이후 미투 운동이 들불처럼 번지면서 그동안 숨죽여 왔던 많은 피해자들이 가해자를 지목하며 용기 있게 자신의 피해사실을 외부에 알렸다. 미투 피해자들의 이런 행동에 ‘용기’라는 단어를 붙인 것은 성폭력은 가해자와 피해자 간 불평등한 권력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알리는 순간부터 불이익을 감내해야 하는 경우가 많고, 오히려 피해자가 폭로 이후 외부로부터 끊임없이 피해사실에 대한 검증을 요구받기 때문이다. 피해자가 외부에 알리는 과정에서 자신의 피해사실을 기억 속에서 되살리고, 복기하는 고통을 감내해야하는 것은 말할 것도 없다.

그러나 미투 운동과 관련한 언론보도(이하 ‘미투 보도’) 속에서 이러한 피해자의 특수한 상황을 배려하는 모습은 찾아보기 힘들다. 오히려 많은 언론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것을 넘어 피해자에게 2차 피해를 가하였다는 지적이 나올 정도이다.<sup>1)</sup> 이러한 미투 보도에서 계속 제기되어 온 문제점은 성인지 감수성의 결여, 피해자에 대한 몰이해로 요약된다.

이 글에서는 먼저 성인지 감수성의 개념을 법원 판결을 중심으로 살펴보고, 성인지 감수성의 관점에서 미투 보도의 문제점을 조명해 보고자 한다. 미투 보도의 문제점은 언론중재위원회 산하 시정권고소위원회에서 권고의 대상이 되었던 기사들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하며, 이후 언론의 자정 움직임 등을 소개하고자 한다.

## II. 성인지 감수성의 개념- 법원 판결을 중심으로

### 1. 대법원 판결을 통해 본 성인지 감수성

성인지 감수성은 보통 사회학적 개념이지 법적인 개념으로 인식되지 않는데 성인지 감수성이라는 말이 매우 추상적이고, 포괄적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대법원은 성범죄 관련 판결을 할 때 ‘성인지 감수성’을 고려하여야 한다고 명시적으로 판시하고 있다. 판결에 성인지 감수성이라는 개념이 처음 등장하여 화제가 되었던 것은 2018년 모 대학교수의 학생 성희롱 사건에서였는데 당시 대법원 판결의 판시 내용은 아래와 같았다.<sup>2)</sup>

1) 민주언론시민연합 (2018, 2, 26). 언론은 정말 미투 운동을 보도할 준비가 되었을까. <민언련의 방송뉴스 비평>. 등을 참조.

2) 진명선 (2019, 7, 19). ‘성인지 감수성’은 어떻게 무고 누명을 벗겼나. <한겨레21>. URL: [http://h21.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47352.html](http://h21.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47352.html) 참조.

“법원이 성희롱 관련 소송의 심리를 할 때에는 그 사건이 발생한 맥락에서 성차별 문제를 이해하고 양성평등을 실현할 수 있도록 ‘성인지 감수성’을 잃지 않아야 한다(「양성평등기본법」 제5조 제1항 참조). 그리하여 우리 사회의 가해자 중심적인 문화와 인식, 구조 등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성희롱 사실을 알리고 문제를 삼는 과정에서 오히려 부정적 반응이나 여론, 불이익한 처우 또는 그로 인한 정신적 피해 등에 노출되는 이른바 ‘2차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하여야 한다. 피해자는 이러한 2차 피해에 대한 불안감이나 두려움으로 인하여 피해를 당한 후에도 가해자와 종전의 관계를 계속 유지하는 경우도 있고, 피해사실을 즉시 신고하지 못하다가 다른 피해자 등 제3자가 문제를 제기하거나 신고를 권유한 것을 계기로 비로소 신고를 하는 경우도 있으며, 피해사실을 신고한 후에도 수사기관이나 법원에서 그에 관한 진술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는 경우도 적지 않다. 이와 같은 성희롱 피해자가 처하여 있는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하는 것은 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른 증거판단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7두74702 판결)

대법원은 위 판결에서 성인지 감수성 적용의 근거법률로 「양성평등기본법」 제5조 제1항을 적시하였는데 위 법조항은 “국가기관 등은 양성평등 실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는 다소 선언적인 의미를 담고 있을 뿐 위 규정에 ‘성인지 감수성’이라는 말 자체는 등장하지 않는다. 때문에 대법원이 「양성평등기본법」의 관련 규정을 매우 적극적으로 해석하여 판결에 성인지 감수성이라는 개념을 가져왔다고 볼 수 있다.

## 2. 안희정 전 지사 판결 등 각급 법원에서의 ‘성인지 감수성’

위 대법원 판결 이후 최근 다시 성인지 감수성 개념이 공론화된 것은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가 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사건의 항소심 판결에서였다. 항소심 재판부는 안 전 지사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을 파기하면서 1심이 피해 여성의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한 부분을 문제 삼았고, “법원 판결은 성인지 감수성을 잃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면서 아래와 같이 판시하였다.

“법원이 성폭행이나 성희롱 사건의 심리를 할 때에는 그 사건이 발생한 맥락에서 성차별 문제를 이해하고 양성평등을 실현할 수 있도록 ‘성인지 감수성’을 잃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양성평등기본법 제5조 제1항 참조). 우리 사회의 가해자 중심의 문화와 인식, 구조 등으로 인하여 성폭행이나 성희롱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알리고 문제를 삼는 과정에서 오히려 피해자가 부정적인 여론이나 불이익한 처우 및 신분 노출의 피해 등을 입기도 하여 온 점 등에 비추어보면 성폭행 피해자의 대처양상은 피해자의 성정이나 가해자와의 관계 및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서울고등법원 2019. 2. 1. 선고 2018노2354 판결)<sup>3)</sup>

대법원을 비롯한 각급 법원의 형사판결에서 2018. 8. 30.~2019. 8. 30.까지 1년간 ‘성인지 감수성’이 언급된 경우는 총 32건으로 집계되는데<sup>4)</sup> 대부분이 안희정 전 지사의 판결과 같이 피해 여성의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는 데 있어 법원이 신중하여야 한다는 맥락에서 성인지 감수성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

이때 법원에서 판시한 내용을 토대로 종합하면, 성인지 감수성이라는 개념은 ①성폭력 피해자의 관점에서 해당 사건을 바라보고 ②사건이 발생한 맥락을 양성평등의 관점에서 면밀히 살펴야 하며 ③성폭력 피해자의 범죄 피해 이후 행위양태가 피해자별로, 피해자가 처한 상황별로 다를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④소위 피해자에게 ‘피해자다움’을 강요하여 사건의 본질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으로 요약할 수 있다. 즉, 성인지 감수성의 핵심은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보호와 이해’에 있다.

### Ⅲ. 미투 관련 언론보도의 침해유형

성인지 감수성의 잣대 위에서 미투 운동 이후 관련 보도들을 분석하면 어떨까. 여기에 답이 될 만한 미투 피해자의 언급이 있다. 이운택 전 연희단패거리 예술감독의 성추행을 처음 폭로했던 김수희 씨는 2018년 2월 자신의 SNS에 기자들을 향해 “용기 내서 폭로한 당사자가 당신의 기사 한 줄에 전화 한 통에 다시 상처받고 있습니다”라는 게시글을 올렸는데, 위 질문에 대한 피해자의 대답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의 이 SNS 글을 보면 미투 피

3) 해당 항소심 판결은 대법원(대법원 2019. 9. 9. 선고 2019도2562)에서도 그대로 유지됐다.

4) 법원판결서 열람 사이트 참조. URL : [http://www.scourt.go.kr/portal/information/finalruling/peruse/peruse\\_status.jsp](http://www.scourt.go.kr/portal/information/finalruling/peruse/peruse_status.jsp)

해자들이 언론 기사로 인해 2차 피해를 입을 수 있음을 충분히 짐작하게 한다.

한국기자협회가 지난 2014년 여성가족부와 함께 만든 '성폭력 사건 보도 가이드라인'은 성폭력 보도시 피해자 보호를 우선 가치로 내세우고 있기는 하나, 성폭력 피해자의 보호와 이해 측면에서 미투 운동 이후 관련 기사들을 평가하면 성인지 감수성은 현저히 떨어진다 고 볼 수밖에 없다. 이하 구체적 기사들을 통해 이 문제를 살펴보고자 한다.

## 1. 언론중재위원회 산하 시정권고소위원회의 미투 보도 시정권고 분석

서지현 검사가 검찰내부 통신망에 자신의 피해사실을 폭로한 것은 2018년 1월 29일로 이때 부터 우리 사회 미투 운동이 본격화되었고, 그 직후부터 지금까지 미투 관련 보도가 이어지고 있다. 미투 운동이 본격화된 직후부터 미투 보도의 성인지 감수성 결여를 지적하는 목소리가 높았는데 2년 가까이 지난 지금 상황은 나아졌을까.

미투 운동 이후 2년 가까이 지난 현 시점의 미투 보도들의 문제점을 분석하기 위해 이 글에서는 비교적 최근인 2019년 2월부터 5월까지 4개월 간 언론중재위원회 산하 시정권고소위원회의 회의 자료를 토대로 시정권고를 받은 미투 운동 관련 기사들을 검토하려고 한다. 위 기간 동안 시정권고를 받은 기사들을 유형별로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미투 보도의 침해유형은 크게 ▲'성폭력 피해자 부각' ▲'성폭력 피해자 사생활 공개' ▲'성폭력 피해자의 사생활 관련 선정적 묘사' ▲'성폭력 가해자 범행수법 등 묘사', 이렇게 4가지로 나뉘는데 언론중재위로부터 시정권고를 받은 48건의 미투 보도 가운데 가장 많은 침해유형은 '성폭력 가해자 범행수법 등 묘사'였다(26건).

성폭력 가해자의 범행수법을 묘사한 26건의 기사 중 대부분이(23건) 성폭력 가해자의 성



적 발언을 자세하게 보도하고, 이를 기사의 제목으로까지 사용한 사례였다. 다른 2건은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명예훼손적 댓글을 그대로 기사화하며 댓글 내용을 여과 없이 제목으로 사용한 경우였다.

성폭력 가해자의 범행수법을 묘사한 것 다음으로 많이 지적된 침해유형은 성폭력 피해자 부각(15건)이었고, 성폭력 피해자의 사생활 관련 선정적 묘사(5건), 성폭력 피해자 사생활 공개(1건) 순이었다.<sup>5)</sup> 성폭력 피해자와 관련하여 부적절한 기사의 침해유형이 피해자 부각, 피해자 사생활의 선정적 묘사, 피해자 사생활 공개 등으로 나뉘어져 있지만 위 3가지 유형은 전부 '성폭력 피해자와 관련된 부적절한 보도를 분류한 것이다. 위 3가지 유형에 해당하여 시정권고를 받은 기사는 총 21건으로 가해자의 범행수법을 묘사한 경우(26건)와 비슷한 수치를 보였다.

성폭력 피해자를 부각한 기사 15건은 전부 성폭력 피해자의 SNS 사진을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그대로 게재한 경우였다. 이 밖에도 성폭력 피해자의 사생활을 선정적으로 묘사해 시정권고를 받은 기사는 5건이었는데, 성폭력 피해를 주장하는 자가 지인과 나눈 사적대화 내용을 기사제목으로 쓰거나(4건), 위 사적대화 내용에 대한 댓글을 기사제목으로 사용해 과도하게 선정적인 묘사를 한 경우(1건)였다.

〈표1〉 유형별 시정권고 현황(2019. 7. 31. 기준)

침해유형	구분	건수
성폭력 피해자 부각	성폭력 피해자의 SNS 사진을 동의 없이 공개하여 신원을 부각함	15
성폭력 피해자 사생활 공개	재판에서 증거로 제출된 성폭력 피해를 주장하는 자의 정신과 및 산부인과 진단서 실물 공개	1
성폭력 피해자의 사생활 선정적 묘사 등	성폭력 피해를 주장하는 자가 지인과 나눈 사적대화내용을 기사제목으로 쓰면서 과도하게 선정적으로 묘사	4
	성폭력 피해를 주장하는 자가 지인과 나눈 사적대화내용에 대한 댓글을 기사제목으로 쓰면서 선정적으로 묘사	1
성폭력 가해자 범행수법 등 묘사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명예훼손적 댓글을 그대로 게재하고 기사 제목으로 사용	2
	성폭력 가해자의 성적 발언을 자세히 보도하고, 이를 제목으로 사용	23
	성폭력 피해자의 피해상태와 가해자의 범행수법을 포함한 범행 장면에 대해 과도하게 묘사	1
성폭력 피해자 부각/성폭력 가해자 범행 수법 등 묘사	피해자의 초상을 공개하여 신원을 부각하고 피해자의 폭로 게시글 전문 게재	1
계		48

5) 나머지 1건은 성폭력 피해자 부각 및 가해자 범행수법 등 묘사. 이 두 가지 침해유형에 동시에 해당하는 경우였다.

시정권고를 받은 매체를 유형별로 분석하면, 인터넷신문(42건), 뉴스통신(4건), 방송(1건), 지역일간지(1건) 순이었다. 인터넷신문이 많은 비중을 차지한 것은 신속성을 주된 가치로 내세우는 인터넷매체들이 속보경쟁을 하는 과정 속에서 데스크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또한 인터넷신문의 경우 기사 클릭 수와 언론사의 수익이 연동되는 구조이다 보니 자극적이고 선정적인 기사를 추구할 수밖에 없고, 이런 언론환경 속에서 미투 보도에서도 성인지 감수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구조적 한계와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하 각 침해유형별 대표적인 기사들을 보며,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 2. 구체적 침해사례

### 가. 성폭력 가해자 범행수법 등 묘사

한국기자협회 '성폭력 사건 보도 가이드라인'은 "언론은 성폭력 범죄를 선정적이고 자극적인 이야기 소재로 다루는 것을 지양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성폭력 범죄의 범행 수법을 자세하게 묘사할 경우 피해자를 성적 대상으로 인식하게 할 위험성이 높고, 이는 피해자에게 2차 피해를 가하는 셈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미투 관련 언론보도에서 성폭력 가해자의 범행수법을 그대로 기사화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뉴스통신사인 뉴스1코리아의 2019년 1월 24일 "생리 열달간 안 하게 해줄까?...인천 사립 여고생 '스쿨미투'" 제하의 기사가 대표적이다. 이 기사는 한 사립학교 여고생들이 학교 교사가 성희롱적, 여성차별적 발언을 한 사실을 '스쿨미투 SNS'를 통해 고발한 것을 보도하면서 해당 교사의 부적절한 발언을 지나치게 상세하게 보도하였다. 이를테면 "교복이 몸을 다 가리기 때문에 음란한 상상을 유발시킨다. 교복이 가장 야한 옷이다", "(여성 교생을 겨냥해) 저렇게 예쁜 사람이 있으면 성추행하고 싶은 것이다", "남성은 고학력 여성과 결혼하는 것을 꺼리니 A대까지만 나와야 한다", "(생리통이 심한 학생에게) 10달 동안 생리 안 하게 해줄까?", "똥 생긴 X들은 토막살인해야 한다"는 등의 발언을 여과 없이 기사화하였다.

해당 기사는 스쿨미투의 사례를 소개하는 외형을 띠고 있지만 기사의 대부분을 해당 교사의 매우 부적절한 성희롱적 발언을 그대로 인용하는 데 할애하였고, 또한 제목도 가장 자극적인 "생리 열달간 안 하게 해줄까"라는 발언에서 직접 인용해 사용했다. 결국 위 기사는 성폭력 피해를 입은 학생들을 다시 한 번 성적 대상화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인터넷 국제신문에 2019년 1월 4일 게재된 "신유용 유도선수 폭로글 보니...코치가 성폭행 후 "임신테스트기 해봐라"(전문포함)"라는 제목의 기사는 자극적인 성폭행 범행수법을 지나치게 상세하게 보도한 경우에 해당한다. 위 기사는 신유용 씨가 자신의 SNS에 공개한 폭로

글을 가감 없이 그대로 게재하였는데 피해자가 게시한 글에는 과거 신유용 씨가 성폭행 피해를 입었을 당시의 상황이 매우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기재되어 있었다.

성폭력 피해자는 자신의 사적 공간인 SNS 등에 글을 올릴 때, 자신의 피해사실을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쓸 수 있다. 당연히 성폭력 피해자는 기사화하기에 적합한 수위로 가공하여 글을 작성할 의무도 없다. 그러나 기자는 다르다. 미투 관련 일부 보도들을 보면, 성폭력 피해자가 SNS 등 불특정다수가 접근가능한 공간에 피해사실을 공개적으로 올린 점을 마치 면죄부처럼 활용한다는 인상을 받게 된다. 일부 언론은 피해자가 올린 글을 그대로 게시하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듯이 제목에서부터 ‘전문포함’이라고 알리며 책임을 회피한다. 하지만 성폭력 피해자의 게시글을 언론사가 가감 없이 직접 인용하는 경우 피해자가 폭로한 피해사실의 본질은 훼손되고, 자극적인 내용들만 가십성으로 소모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진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

#### 나. 성폭력 피해자 부각

사회적으로 이슈가 된 미투 사건이라고 하더라도 성폭력을 당한 미투 피해자가 국민의 알 권리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 대중이 피해자가 누구인지 호기심에 가까운 관심을 갖더라도 언론은 미투 보도에서 피해자를 언급하는 데 신중해야 하며, 이는 미투 피해자가 자신의 신원을 공개한 경우라도 마찬가지이다.

미투 피해자가 자신의 신원을 공개한 것은 자신의 불이익을 감내하면서까지 피해사실을 외부에 알릴 필요가 있을 때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피해자가 자신을 외부에 드러냈다고 해서 언론이 기사에서 피해자의 신원을 부각할 이유는 전혀 없다. 그런데도 몇몇 언론은 피해자의 사진을 동의 받지 않고 방송에 내보내거나 피해자의 사생활이 담긴 사진을 여과 없이 보도했다.

채널A는 2019년 1월 14일 방송에서 자신의 신원을 공개하고, 과거의 성폭행 피해사실을 외부에 알린 전 유도선수 신유용 씨의 사진을 본인 동의 없이 무단으로 게재하여 언론중재위의 시정권고를 받았다. 해당 방송을 보면, 출연 기자가 신유용 씨의 과거 성폭행 피해사실을 소개할 때 신 씨의 정면 얼굴 사진이 함께 나오며, 신 씨가 여행을 가서 찍은 것으로 보이는 지극히 개인적인 사진들도 함께 소개된다. 단순히 흥미를 끌기 위해서가 아니라면 이처럼 성폭력 피해자의 사진들이 관련 보도와 함께 제시될 필요는 없다. 신 씨의 SNS상 사진을 동의 없이 무단으로 게재하여 시정권고를 받은 언론사는 이밖에 14곳이 더 있었다.

#### 다. 성폭력 피해자의 사생활 관련 선정적 묘사

안희정 전 지사의 비서 성폭행 사건은 비서 김지은 씨의 폭로가 있을 당시 안희정 전 지사

가 차기 대통령으로 촉망받던 상황이었던 만큼 사안의 폭발력이 컸고 언론의 관심도 매우 높았다. 또 관련 형사판결에서 1심은 무죄, 2심은 유죄를 선고해 법원의 판결까지도 엇갈리면서 소송 외적인 공간에서도 많은 논란이 불거졌다. 특히 안희정 전 지사가 2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이후 그의 부인 민주원 씨가 자신의 SNS에 김지은 씨와 안 전 지사가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내용 등을 폭로성으로 공개하였는데, 이를 많은 언론이 받아쓰기 식으로 보도하면서 이 과정에서 김지은 씨의 사생활이 선정적으로 기사화되었다.

대표적으로, 뉴스통신사인 아시아뉴스통신은 2019년 2월 21일 “김지은, 슬립만 입고 안희정 방에서… “뿌듯하고 즐거웠다” 안희정 부인 민주원 ‘재폭발’” 제하의 기사에서 김지은 씨가 지인에게 보낸 “(안 지사에게) 릴렉스와 생각할 시간을 많이 드린 것 같아 뿌듯하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그대로 기사에 인용하며, 제목으로 사용하였다. 이는 “사적대화 내용을 과도하게 선정적으로 묘사하여 김지은 씨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를 유발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에서 언론중재위의 시정권고 대상이 되었다. 또한 위 기사는 제목에서 민주원 씨의 폭로 내용과 김지은 씨가 제3자와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내용을 교묘하게 한 문장에 넣어 불필요하게 김지은 씨에 대한 부정적 평가를 유도했다.

#### 라. 성폭력 피해자 사생활 공개

성폭력 피해자 사생활 공개로 시정권고를 받은 기사 1건도 안 전 지사와 관련한 보도에서였다. 안희정 전 지사의 부인 민주원 씨는 김지은 씨가 재판과정 중에 제출한 김 씨의 병원 진단서를 김 씨의 주장을 탄핵하기 위한 목적에서 자신의 SNS에 공개했는데 인터넷 금강일보는 2019년 3월 22일 위 진단서의 실물을 기사와 함께 그대로 공개했다. 위 기사는 성폭력 피해자의 사생활을 공개한 이유로 시정권고를 받았다.



안희정 전 지사가 공인이고, 안 전 지사의 성폭력 혐의가 공적인 관심 사안이라고 하더라도 피해를 당했다고 주장하는 여성을 기사화하는 데에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 특히 피해 여성의 내밀한 개인정보가 담긴 병원기록을 게재하는 데 있어서는 더욱 그렇다. 그런데 해당 언론은 김 씨의 산부인과, 정신과 진단서의 사진을 민주원 씨의 SNS를 인용하는 형식을 빌어 그대로 공개하였다. 단순히 기사 조회수를 높이기 위한 것이 아니라면 전혀 필요하지 않은 정보를 제공한 것이다.

이상은 미투 관련 보도에서 언론중재위로부터 시정권고를 받은 대표적 기사들을 침해유형별로 정리한 것이다. 이 기사들을 보면 성인지 감수성이 제대로 작동했다고 보기 어려운 데, 몇몇 기사는 성인지 감수성에 무신경하다거나 이를 단순히 무시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적극적으로 성인지 감수성의 원칙에 저항한다는 인상마저 준다. 미투 보도에 성인지 감수성의 결여는 언론의 단순한 무신경에 기인하는 경우도 있지만 의도적인 부분도 없지 않다는 생각이다. 기사의 조회수, 방송 시청률이 언론사의 수익과 연동되는 상황에서 미투 보도는 성폭력이라는 자극적인 사안과 결부되어 있는 만큼 언론이 이를 악용할 개연성도 그만큼 큰 것이다.

하지만 이런 지적이 계속되면서 미투 이후 언론 스스로의 자정 움직임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한국기자협회는 종전의 성폭력보도 가이드라인을 구체적으로 다시 손질했고, 여러 토론회 등에서 언론 스스로가 반성의 목소리를 내기도 했다.

## IV. 미투 운동 이후 언론의 개선을 위한 노력

### 1. 미투 운동 이후 성폭력보도 가이드라인

미투 관련 언론보도의 성인지 감수성 결여를 우려하는 지적은 미투 운동 초기부터 있어왔는데 이에 대한 언론 스스로의 자정 움직임이 있었다는 점은 고무적이다.

2014년 한국기자협회, 여성가족부,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여성아동폭력피해중앙지원단은 공동으로 '성폭력 사건 보도수첩'을 발간해 그 안에 '성폭력 사건 보도 가이드라인', '성폭력 사건 보도 실천요강'을 게재했는데, 한국기자협회는 미투 운동이 촉발된 이후인 2018년 6월 위 '성폭력 사건 보도수첩'을 보다 구체화하는 방향으로 개정해 188개 회원사 기자들에게 배포하였다<sup>6)</sup>. 한국기자협회는 '사건별 언론보도 사례와 피해유형' 등 일선 기자들이 무신경

6) 여성가족부 정책뉴스 (2018, 6, 10), "성폭력·성희롱 사건 보도 시 기억할 5가지!". URL : [http://www.mogef.go.kr/nw/enw/nw\\_enw\\_s001d.do?mid=mda700&bbfSn=706267](http://www.mogef.go.kr/nw/enw/nw_enw_s001d.do?mid=mda700&bbfSn=706267)

하게 간과할 수 있는 사안들을 구체적으로 선별해 피해자 보호 측면에서 기사화에 유념하도록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였는데 구체적인 내용을 소개하면 아래와 같다<sup>7)</sup>.

한국기자협회는 우선 성폭력·성희롱 사건 보도의 경우 언론부터가 잘못된 사회통념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점을 첫 일성으로 내걸었다. 성폭력 사건은 피해자가 인격을 침해당한 심각한 인권침해의 문제이자, 그 원인이 잘못된 성 인식과 성차별적 문화 등 사회문화적 구조에 있다는 것을 유념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피해자 보호 ▲선정적, 자극적 보도 지양 ▲신중한 보도 ▲성폭력 예방 및 구조적인 문제해결을 위한 노력을 지침으로 제시하며, 그 구체적 방향성을 상세하게 소개하였다. 또한 단순히 해당 사안을 젠더감수성의 견지에서 보도하는 것을 넘어, 보다 적극적으로 피해자 보호 제도나 관련 법률 정보, 성폭력 예방 프로그램 등 성폭력 예방과 피해 구제를 위한 내용을 적극적으로 보도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언론의 가이드라인 마련 등 자정적 움직임이 아직 와닿을 정도는 아니라는 지적이 많다. 이런 이유로 언론 외부에서 언론에 대한 규제책 마련이 현실화되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 2. 그밖의 제언

한국기자협회가 새로운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였지만 그 이후에도 미투 관련 보도에 있어 언론이 위 가이드라인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하는 목소리는 이어졌다.<sup>8)</sup> 또한 미투 운동 이후에 ‘기자 단톡방’ 사건에서 기자들은 게시판의 익명성 뒤에 숨어 직업윤리를 저버린 채 성폭력 피해 여성을 성적 대상화하며 부적절한 품평을 이어갔고, ‘미투 조심하라’며 미투 운동을 조롱했던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다. 이는 관련 보도를 다룰 때 언론의 태도가 어떠한지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예이자, 언론의 신뢰를 떨어뜨린 대표적 사건이었다.

언론종사자가 바뀌지 않으면 보도관행이 바뀔 수가 없는데 언론종사자에게 성인지 감수성을 스스로 유념하라고 요구하기에는 아직 갈 길이 멀어 보인다. 성인지 감수성, 이 원칙이 언론의 성폭력 관련 보도 과정에서 훼손될 경우 성폭력 피해자는 더 큰 이중, 삼중의 고통을 받을 수밖에 없다. 성폭력 관련 보도에 다른 범죄 보도와는 차별화된 민감성, 예민성이 요구되는 것은 바로 이런 부분 때문이다. 이런 점을 고려했을 때 성인지 감수성은 언론에게 단순히 권고하고 넘어갈 원칙이 아닌 강제할 원칙이라고 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언론감

7) 한국기자협회 홈페이지 참조. URL : [http://www.journalist.or.kr/news/section4.html?p\\_num=11](http://www.journalist.or.kr/news/section4.html?p_num=11)


8) 윤수현 (2018, 7, 4). 안희정 공판 보도, 성폭력 보도 가이드라인 어겨. <미디어스>. URL : <http://www.media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28171>

시기관의 관련 언론보도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와 이 모니터링 결과를 토대로 부적절한 보도를 한 언론에 대한 실질적인 규제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구체적으로 부적절한 미투 관련 기사의 퍼나르기를 바로 막을 수 있도록 포털사이트 등에서 해당 기사가 검색되지 않게 임시적으로 해당 기사를 차단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있다.<sup>9)</sup> 또한 지금 나와 있는 성폭력 보도 가이드라인이 실질적으로 기능하도록 위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 해당 언론사에 적절한 수위의 불이익을 주는 방안을 언론과 합의해 나가는 과정도 필요해 보인다.

## V. 맺음말

우리 언론의 미투 관련 기사들을 보면 아직도 성폭력 피해자가 아닌 대중, 그것도 매우 자극적으로 해당 사안을 소비하려는 대중의 관심에 맞춰 보도하는 경향이 없지 않다. 언론이 독자나 시청자의 관심사에 부합하는 기사를 작성하고,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켜 주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본분이다. 그러나 미투 관련 보도에 있어서는 독자뿐만 아니라 미투 피해자가 다른 한 축에 반드시 자리잡고 있어야 한다.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보호와 이해를 골자로 하는 성인지 감수성이 미투 관련 기사의 대전제가 되지 않는 이상 언론은 성폭력의 또 다른 2차 가해자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미투 운동을 촉발시킨 서지현 검사는 언론 인터뷰에서 “이제까지 성폭력 피해자를 괴롭혀온 것은 비단 가해자뿐 아니라 전 사회였다”고 했다. 어떤 입장을 견지하느냐에 따라 언론은 성폭력 피해자에게 다시 피해를 주는 가해자가 될 수도, 피해자에 대한 이해를 토대로 성폭력이 만연한 사회의 구조적 문제를 바로잡는 피해자 보호의 최후 보루가 될 수도 있다. 아직까지의 언론은 전자에 가깝다는 지적이 많지만 피해자 보호의 보루가 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고, 또 언젠가는 그렇게 되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언론 스스로의 자정 움직임도 반드시 수반되어야 하겠지만 언론중재위,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 언론관계 기관들을 중심으로 성인지 감수성의 가치를 훼손한 보도에 대한 실질적인 규제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9) 박준용 (2018, 3, 20). “미투 보도’ 고민 없이 ‘받아쓰기’하면 안 됩니다”. <한겨레>. URL: <http://www.hani.co.kr/arti/society/media/836949.html>